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향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·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,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작품 보수·철거 등을 조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, 미술작품 선정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은 의무로 공모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문화예술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69호, 2022. 1. 18. 공포·2022. 7. 1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

나아가 미술작품 감정·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등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하고, 미술작품의 감정·평가 신청 이후에 설치 비용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, 미술작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·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3조제1항, 제3항, 4항)
- 나.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‘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’을 추가(안 제14조제2항)

- 다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
- 다. 시·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했을 경우 감정·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5조의3)
- 마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미술작품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5조의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협의 예정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미술작품”을 “건축물 미술작품(이하 “미술작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법 제9조의2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·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감정·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

다른 감정·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작품명 변경

2.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치비용의 증감분이 감정·평가를 받은 설치비용의 10% 이내이고 이를 미술작품의 제작비용에 반영하는 경우

3. 미술작품의 2m 이내의 위치변경

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제13조제2항에 따른”을 “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”로, “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”를 “미술·건축·공공디자인·조경·안전·유지관리 분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그 밖에 미술작품”을 “미술작품”으로, “기여도 등”을 “기여도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”을 “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”로, “공보에 공고”를 “공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6.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

7. 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미술작품의 관리 및 점검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작품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2의 제목 “(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·관리)”를 “(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제15조의2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미술작품의 현황 및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관리총괄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·관리한 현황 및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미술작품의 공모 등)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시·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한 경우 그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감정·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)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‘시·도지사 등’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제공을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서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
 2. 법 제9조2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
 3. 법 제9조3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명령 현황
 4. 법 제9조4에 따른 공모 현황
 5.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
 6.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등은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미술작품 관리총괄표

관리번호			작품명		
작품분류			작가명		
설치장소 (주소)	시·도	시·군·구	도로명	번지 (상세 위치:)	
작품가액(원)			설치일자		
건축주 (관리자 또는 소유자)			건축물용도		
작품이미지				비고 (작품변경내용 등)	
일자	관리·점검 사항		조치 사항		비고
담당부서명		담당자		담당자 연락처	

※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·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칸을 배열하는 등 전자적 처리방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㎡(재활용품)]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)	제4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)
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 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(이하 “전문예술법인·단체”라 한다)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·단체 지정(변경)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</u>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</u> <u>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</u> <u>도지사</u>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<u>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[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</u>	제12조(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) ① ----- <u>건축물 미술작품(이하 “미술작품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, 주차장·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 및 공기조화실(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)의 면적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]이 1만 제곱미터(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) 이상인 것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,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~ 10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13조(미술작품의 설치 절차·방법)
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·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

· 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·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.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----.

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·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(이하 “설치 비용”이라 한다)이 증액된 경우 제1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④ 제2항에 따라 감정·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정·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4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) ①시
 · 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
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
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·
 평가를 위하여 미술·건축·환경
· 공간디자인·도시계획분야
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
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
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
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
 시켜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
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
관에 대한 기여도 등

<신설>

1. 작품명 변경

2.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치
비용의 증감분이 감정·평가
를 받은 설치비용의 10% 이내
이고 이를 미술작품의 제작비용
에 반영하는 경우

3. 미술작품의 2m 이내의 위치
변경

제14조(미술작품심의위원회) ①
 ----- 법 제9조의2제2항에
따라 -----

 ----- 미술·건축
· 공공디자인·조경·안전·유지
관리 분야 -----

 -----.

 -----.

②-----

 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미술작품-----
 ----- 기여도

6.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

<신 설>

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④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· 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미술작품의 철거 · 훼손 시의 조치) 시 ·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 · 훼손 ·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의2(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 · 관리) 시 ·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 · 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

적정성

7. 그 밖에 시 · 도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

③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-----
공고-----.

<삭 제>

제15조(미술작품의 관리 및 점검)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자치구의 구청장 (이하 “시장 · 군수 · 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작품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의2(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 · 관리) 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미술작품의 현황 및 제15조에 따른 점검

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관리총괄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·관리한 현황 및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3(미술작품의 공모 등)

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한 경우 그 시·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감정·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5조의4(미술작품의 자료제공

요청)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‘시·

도지사 등'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제공을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서 요청할 수 있다.

1. 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

2. 법 제9조2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

3. 법 제9조3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명령 현황

4. 법 제9조4에 따른 공모 현황

5.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

6.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·도지사 등은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758